

주식회사 모나리자 윤리강령 규정

2023. 6. 7

주식회사 모나리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윤리강령은 (주)모나리자 전 계열회사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함)이 지켜야 할 구체적 행동기준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임직원 개인 및 회사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본 윤리강령은 전 임직원(파견직 및 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모든 임직원은 본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4조(임직원의 기본 윤리)

- ① 임직원은 (주)모나리자의 일원으로서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여, 개인의 품위는 물론 (주)모나리자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동시에 보편적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제5조(사명의 완수)

- ① 임직원은 (주)모나리자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 및 이해하고, (주)모나리자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본 윤리경영 및 실천서약을 성실하게 적극 실천한다.
- ② 임직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건강한 조직문화의 형성과 유지)

- ① 임직원은 상호간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형성 및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상호간에 필요한 예의를 지키며, 고압적이거나 불손한 언행을 일절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임직원은 혈연·학연·지연·성·종교·인종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를 이유로 파벌을 조성할 수 있는 모임을 갖거나 가지도록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 접촉에 의한 행위를 포함하여, 언어·시각·청각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 또는 수치심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말과 행동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 ⑤ (주)모나리자의 전 계열회사 또는 임직원이 다른 근로자에게 회사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의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 ⑥ 임직원은 본인이나 타인의 승진, 전보 등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의 청탁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해충돌의 회피)

-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칙을 중시하고, 공·사를 구분하며,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주)모나리자와 임직원 개인의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 이를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모나리자의 합법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주)모나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겸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처 임직원이나 퇴직한 임직원의 부적절한 요청사항을 배제하여야 하며, 그러한 요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대응한다.

제8조(회사 자산의 보호)

- ①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고객 정보 포함)을 업무적인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유출하지 않는다.
- ② 임직원은 회사에서 인가한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③ 임직원은 회사가 보유하거나 취득할 지식재산권을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투명한 정보 운영 및 회계 관리)

-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

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 ④ 임직원은 고객정보, 기술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제10조(부당이득의 수수금지)

- 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나 금전(금품), 향응, 각종 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전 1항을 제공받았을 경우, 그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부서장 또는 윤리경영담당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 재산상의 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 ④ 임직원은 여하한 이유로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1조(고객 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2조(고객과의 약속 이행)

- ① 임직원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고객과 성실히 소통한다.
- ② 임직원은 고객의 불만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객만족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③ 임직원은 고객의 알 권리를 존중하며,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3조(고객 보호)

- ① 임직원은 최고의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여 고객의 가치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② 임직원은 고객의 정보를 소중하게 관리 및 보호하고, 고객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정보를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4장 주주에 대한 윤리

제14조(주주에 대한 책임)

- ① (주)모나리자 및 임직원은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의 제안 및 결의를 존중한다.
- ② (주)모나리자 및 임직원은 재무정보를 정확한 거래 사실을 기반으로 적절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통하여 산출한다.
- ③ (주)모나리자 및 임직원은 법령에 따라 회사의 재무적 변동 등 경영상의 주요사항과 기업정보 등을 성실하게 공시한다.

제15조(주주이익의 보호)

- ① (주)모나리자와 임직원은 주주의 권익과 투자가치 보호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다.
- ② (주)모나리자와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주주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 ③ (주)모나리자와 임직원은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알 권리를 존중하며,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긴밀한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5장 경쟁사 및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제16조(자유경쟁의 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17조(거래법령의 준수 등)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제18조(공정 거래)

- ① 임직원은 회사가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회사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④ (주)모나리자는 거래업체를 포함한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19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③ (주)모나리자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부당한 정치활동이나 관여 금지)

- ① (주)모나리자는 부당하게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주)모나리자는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공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 및 위험 예방)

- ① (주)모나리자 및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방지 등 위험예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주)모나리자는 안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 ③ 임직원은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지고 회사가 수립한 관리계획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와 위험이 없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2조(환경보호)

- ① (주)모나리자와 임직원은 환경에 관한 국내·외 법령을 준수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 ② (주)모나리자와 임직원은 기업경영을 함께 있어서 환경 친화적 내용과 방식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임직원은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7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23조(임직원 존중)

- ① (주)모나리자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 ② (주)모나리자는 최선을 다하는 중에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는다.

제24조(삶의 질 향상)

- ① (주)모나리자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 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 (주)모나리자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25조(공정한 대우)

(주)모나리자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6조(자기개발 지원)

- ① (주)모나리자는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제도와 인재양성 정책을 구축하여 적극 지원한다.
- ② (주)모나리자는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8장 보칙

제27조(준수의무와 책임)

- ① 모든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② CEO, 임원, 부서장 등은 소속 임직원의 본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8조(포상 및 징계)

- ① CEO는 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CEO는 본 윤리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전2항에 따른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9조(윤리강령의 운영)

- ① CEO는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 등에 맞추어 윤리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 ② CEO는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제정일) 본 윤리강령은 2023. 06. 07.로 제정한다.

제2조(시행일) 본 윤리강령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